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9. 3.
제출자 : 이천시장

□ 제안이유

이천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을 통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